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작업대 추가〉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4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高所) 작업대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27.
3. 회부연월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高所) 작업대 추가

개정안은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 작업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 ----- -----고소(高所) 작업대 등 그-----. 2. ~ 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함),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산림, 건축물, 차량 등을 ‘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제3조 제1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관계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2호)¹⁾.

이를 볼 때, 소방대상물이란 화재 예방·안전관리·경계·진압·조사·구조·구급 등 소방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또는 물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1)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모든 소방활동 대상물을 전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소방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은 소방의 활동 구역인 육상과 내수면에서 소방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과 동산을 예시로 열거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高所) 작업대”를 추가하려는 것인데(안 제2조제1호),

고소작업대란 일반적으로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건물 외벽, 설비, 전기시설, 창고, 산업시설, 풍력발전 설비 등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의미함.

최근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대상물의 예시에 고소작업대를 추가하여 고소작업대가 소방대상물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2010년 이후 국내 풍력발전기 화재 발생 현황>

□ 풍력발전소 설치 현황(2026.1.1. 기준)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사업장 (개소)	123	34	2	8	21	1	1	3	21	6	25	1
기수	890	227	5	50	221	7	1	19	177	37	145	1

□ 연도별 화재 발생 현황

발생 년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14	2	1	0	0	0	1	0	1	0	0	1	1	1	1	0	2	3
육상	13	2	1	0	0	0	1	0	1	0	0	0	1	1	1	0	2	3
해상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 화재발생 세부 현황²⁾

연번	발전소명	사고일자	발생장소	소방시설/소화방식
1	행원풍력	'10.10.25.	나셀 화재(0.75MW)	미설치/자연소화
2	영흥풍력	'10.11.2.	나셀 화재(0.66MW)	미설치/자연소화
3	대관령풍력	'11.10.11.	나셀 화재(0.66MW)	미설치/자연소화
4	김녕풍력	'15.7.7.	나셀 화재(0.75MW)	미설치/자연소화
5	한경풍력	'17.4.12.	나셀 화재(1.5MW)	설치/자연소화
6	탐라해상 풍력	'20.11.8.	나셀 화재(3MW)	설치/헬기소화
7	영흥화력 2단지풍력	'21.2.22.	나셀 화재(3MW)	설치/자연소화
8	용대풍력	'22.10.19.	나셀 화재(0.75MW)	소화기/자연소화
9	태기산 풍력	'23.2.28.	나셀 화재(2MW)	설치/자연소화
10	화산 풍력	'25.5.12.	나셀 화재(1.65MW)	설치/헬기소화
11	강원풍력	'25.11.27.	나셀 화재(2.0MW)	설치/자연소화
12	도음산풍력	'26.1.15	인버터 화재(3.2MW)	설치/화재진압 ³⁾
13	대명GEC 풍력	'26.2.10.	나셀 화재(1.5MW)	설치/헬기소화
14	영덕풍력	'26.3.23	나셀 화재(1.65MW)	설치/자연소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 2) 현재 전국에 설치된 풍력발전소는 123개소 890기인데, 2010년 이후에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14건) 중 35.7%인 5건의 화재 사고가 2025년 이후에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풍력발전기의 화재 발생이 최근에 빈번한 이유에 관하여 소방청은 설비 노후화와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까지 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소작업대 역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에 포함되어 당연히 소방대상물에 해당되고⁴⁾,

소방대상물의 정의 규정은 다양한 소방활동의 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편성과 일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구조물이나 장비를 소방대상물의 예시로 법률에 계속 열거하는 경우 법문의 간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구조물이나 장비를 소방대상물의 예시로 추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반대로 열거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장비는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3) 도음산 풍력발전기 인버터 화재는 나셀이 있는 타워 상부가 아닌 “하부”의 ‘전력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대의 접근이 가능하여 화재진압이 가능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4) 실제로 최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화재(“26.3.23.”)에서도 소방청은 화재진압을 실시하였음.